들꽃 피는 노인 요양원 안내서

1.운영규정의 개요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1. 입소정원 - 60명
- 2. 입소대상
-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4,5 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 3) 모집방법
-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음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들꽃피는 노인요양원 입소비용 - 2026년

1.장기요양급여 수가 (단위:원)

구 분		(2026년 1월 1일부터) 1 일	30 일
요양급비	1 등급	93,070 원	2,792,100 원
	2 등급	86,340 원	2,590,200 원
	3.4.5 등급	81,540 원	2,446,200 원
	경관식 (1일)	처방내용에 따름	
	식재료비 (3식)		7,500 원
여	간식비 (1회)		2,000 원

구 분	일반 20% - 30일 기준			경감대상자 8% - 30일 기준			기 초 수급자	경감대상자 12% - 30일 기준			기 초 수급자
-개정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1 등급	558,420	285,000	843,420	223,368	285,000	508,368	.	335,052	285,000	620,052	.
2 등급	518,040	285,000	803,040	207,216	285,000	492,216	.	310,824	285,000	595,824	.
3.4.5 등급	489,240	285,000	774,240	195,696	285,000	480,696	.	293,544	285,000	578,544	.
구 분	일반 20% - 31일 기준			경감대상자 8% - 31일 기준			기 초 수급자	경감대상자 12%-31일 기준			기 초 수급자
-개정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1 등급	577,034	294,500	871,534	230,814	294,500	525,314	.	346,220	294,500	640,720	.
2 등급	535,308	294,500	829,808	214,123	294,500	508,623	.	321,185	294,500	615,685	.
3.4.5 등급	505,548	294,500	800,048	202,219	294,500	496,719	.	303,329	294,500	597,829	.
구 분	일반 20% -29일 기준			경감대상자 8% - 29일 기준			기 초 수급자	경감대상자12% - 29일 기준			기 초 수급자
-개정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1 등급	539,806	275,500	815,306	215,922	275,500	491,422	.	323,884	275,500	599,384	.
2 등급	500,772	275,500	776,272	200,309	275,500	475,809	.	300,463	275,500	575,963	.
3.4.5 등급	472,932	275,500	748,432	189,173	275,500	464,673	.	283,759	275,500	559,259	.

2.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일반 등급 환자의 한 달 30일 기준으로 책정한 비용)

*이미용비: 1개월 1회 한하여 무료(개인적으로 원하는 이미용실을 원할 경우 개인부담)

*식 대 : 3식 7,500원 X 30일 = 225,000원 , 간식비 2,000원 X 30일 = 60,000원 총계: 285,000원

*경관식: 처방내용에 따름

3.매월입소비용 이외의 본인 및 가족부담사항

매월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혈압약, 당뇨약 등) 개별적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식품등

< 2023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0%
진료구분	본인부담금 (기준)		
	일반 (20%)	경감/의료급여(8%)	경감/의료급여(12%)
재진비용			
초진비용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 (보호자) 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 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 의사를 통한 격주 1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 조사를 실시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 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 원 한다.
④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2. 시설 운영규정 제정•개정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제천 시청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원장, ② 입소자 대표, ③ 지역주민, ④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⑤ 관계공무원

   ⑥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7.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원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종사자근무체계 (직원 총 44명)

① 요양보호사 30명: 주야근무팀 7명씩 3개조가 주주 야야 휴휴 체계로 교대근무, 주간근무팀 9명

주간5일근무(평일1일, 주말1일휴무)

② 간호조무사2명: (일월화수목, 화수목금토) 교대근무

③ 조리원3명: 1일 2명 근무체계로 교대근무 (화금휴무, 수일휴무, 월목휴무)

④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 주간5일근무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비용: 입소비용별지참고

5.시설의 규모 및 설비

설치일자	***2014, 08, 08***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wildflowerss***		
주 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 ***91- 2***	전화번호	***043)921- 9090***
시설의 규모			
건축면적	***426.3㎡***	연 면 적	***1,418.69㎡***
층별구분	시설이용내역, 설비		
지하***1***층	세탁실 건조장 기계실 창고 비상대피실		
지상***1***층	생활실***(3***개 - ***3***인***1***실***)*** /별관 : 물품보관창고 원장실, 사무실, 주방, 식당,주차장, 영양 및 위생실 ,식자재보관실, 면회실 및 휴게실		
지상***2***층	생활실***(7***개 - ***3***인***1***실***)*** 특별침실, 요양보호사실, 목욕실		
지상***3***층	생활실***(7***개 - ***3***인***1***실***)*** 특별침실, 간호사실, 목욕실 ,상담실		
지상***4***층	생활실***(6***개 - ***2***인***1***실***5***개 ***1***인***1***실 ***1***개***)*** 특별침실,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관리실		

6. 책임보험

① 삼성 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2021,8,12~ 2031, 8, 12 10년만기) :하단에 첨부

② 삼성화재보험 (보험기간: 2023, 11, 8 ~2028, 11, 08 5년만기연장)

7.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① 쾌적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어르신들의 심신안정에 도움이 됨. 넓은 잔디밭이 있어 어르신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됨.
전문분야의 직종을 고루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급여서비스를 제공함.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법정인력보다 추가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② 2018년 장기요양기관평가대회에서 최우수등급 (A) 획득
2021년 장기요양기관평가대회에서 우수등급 (B) 획득

③ 프로그램실 및 요양원체육부대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진행,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네이버카페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사진 찍어 게시하여 보호자들과 소통함.

④ 매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보호자와 지역사회인사들을 초청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천예술인협회(대표 권나수)가 8일 탱양동 소재 들꽃피는 요양원을 찾아 어버이날 효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효 음악회는 들꽃피는 요양원(원장 황운실)이 주관·주최 하고 재천예술인협회가 협찬하는 음악회로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 어르신들과 요양원에 입소 중인 어르신들의 가족분들을 모시고 어버이 은혜의 감사정을 생각하며 어르신들께 작지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들꽃피는 요양원은 2014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최고의 쾌적한 시설과 어르신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요양시설로 짓추어져 있으며, 현재 56명의 어르신들께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직원 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 내 최고의 요양시설이다.

음악회는 MC 4명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전데나 씨의 사회로 시작 되었으며, 첫 무대는 ▲동상사니어 난타단장 김명희 외 5인) 공연으로 시작 되었으며, 연주자의 흥한 가수로는 ▲색소장구(양경희), ▲가수(김기순), ▲장로 색소폰(김준년), ▲장로 색소폰(수운재), ▲대니 색소폰(백혜원), ▲가수(수수지), ▲가수(이철진), ▲노드라니무 색소폰 장상열(어등석 단장 외 1명), ▲가수(임국희), ▲가수(김기숙), ▲가수(진미), ▲가수(진미)▲가수(진미)의 한국국악협회 제천시지부(지부장 곽명수 외 3인)등 많은 예술 공연팀과 연주자 및 가수들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 공연을 선보였으며,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흥을 돋우며, 열기를 뜨겁게 하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들꽃피는 요양원 원장님과 어르신들을 돕보는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며 어르신들을 보살피는가 하면 조금씩이라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요양원 내로 모시며 최대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어르신들에 즐겁 수 있도록 보살핌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이 엿보였다.

어버이날을 맞아 재천경찰서 임경호 서장은 들꽃피는 요양원을 찾아 음악회에 참석하여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면서 어버이 은혜에 늘 감사함을 생각하고 고개숙을 마음에 새기고 했다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편히 사실수 있도록 지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드렸고 어버님 아래님께 감사의 보탄으로 노래까지 선사했다.

권나수 대표는 임경호 재천경찰서장님께서 행사에 오셔서 공연팀을 격려하고 행사 안전 및 시군민의 안전을 위해 봉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은 감사를 드린다며, 요즘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의 요양보호시설을 찾아 어머님 아버님께 작게나마 음악회로 효를 할 수 있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운실 원장은 재천예술인협회 권나수 대표님은 단원님들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주 이런 음악회를 열생각다 말씀하며 어르신들께서 편히 생활하며 효라도 돌변할이 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늘 요양원에서 함께하는 많하는 식 봉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재천예술인협회는 근무대 및 요양보호시설을 찾아 자선 위문공연 행사를 펼치는 한편 시 업의 공조에서 힘은 가수들과 예술인들이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 예술인 단체로 지역 관광객 유치 및 (한동사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예술공연 단체이다.

별 지 참 고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하루 일정표

보험가입인증서

Certificate of Insurance 保险证明书

업 체 명	들꽃피는 노인요양원
소 재 지	(27116)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91-2 들꽃피는 노인요양원 (장평리)

본 인증서는 삼성화재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도둑 성공예감		
증권번호	52123421770000	보험기간	2021-08-12 ~ 2031-08-12
보장내용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 1억원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3억원 화재손해(건물(실손)) : 1십억원		

※보험의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보험증목에 적용되는 약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기간이 종하여 보상하며, 계약만료/실효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認證

하 루 일 정 표

*들꽃피는 노인요양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30	일일건강점검 의복관리 몸단장						
08:00	아침식사(개인별 영양상태 확인 후 죽식, 잡곡밥 구분제공) 개인위생관리(세안, 양치보조, 배변등)						
09:00	환경정리 목욕 머리감기 의복관리 몸단장						
10:30	오전간식(맛있는 스넥, 견황, 사탕, 커피와 차 한잔)						
11:00	기능훈련(어르신의 기능에 맞도록 체조 및 기능향상훈련)						
12:00	점심식사(개인별 영양상태 확인 후 죽식, 잡곡밥 구분제공) 개인위생관리(세안, 양치보조, 배변등)						
14:00	들꽃 잔디달 산책 병원이동도움 TV시청						
15:00	오후간식(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영양간식 제공. 제철과일 주1회이상, 조리간식 주1회이상)						
15:40	즐거운 프로그램(치매재활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종교활동-수요일, 일요일)						
17:00	저녁식사(개인별 영양상태 확인 후 죽식, 잡곡밥 구분제공) 개인위생관리(세안, 양치보조, 배변등)						
21:00	취침준비(각 방별로 요양보호사들의 침상확인 및 숙면유도분위기 형성)						
21:30	취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들꽃피는 노인요양원 입소비용 - 2026년

1.장기요양급여 수가 (단위:원)

구 분		(2026년 1월 1일부터) 1 일	30 일
요양급비	1 등급	93,070 원	2,792,100 원
	2 등급	86,340 원	2,590,200 원
	3.4.5 등급	81,540 원	2,446,200 원
	경관식 (1일)	처방내용에 따름	
	식재료비 (3식)		7,500 원
	간식비 (1회)		2,000 원

구 분	일반 20% - 30일 기준			경감대상자 8% - 30일 기준			기초수급자	경감대상자 12% - 30일 기준			기초수급자
-개정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1 등급	558,420	285,000	843,420	223,368	285,000	508,368	.	335,052	285,000	620,052	.
2 등급	518,040	285,000	803,040	207,216	285,000	492,216	.	310,824	285,000	595,824	.
3.4.5 등급	489,240	285,000	774,240	195,696	285,000	480,696	.	293,544	285,000	578,544	.
구 분	일반 20% - 31일 기준			경감대상자 8% - 31일 기준			기초수급자	경감대상자 12%-31일 기준			기초수급자
-개정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1 등급	577,034	294,500	871,534	230,814	294,500	525,314	.	346,220	294,500	640,720	.
2 등급	535,308	294,500	829,808	214,123	294,500	508,623	.	321,185	294,500	615,685	.
3.4.5 등급	505,548	294,500	800,048	202,219	294,500	496,719	.	303,329	294,500	597,829	.
구 분	일반 20% -29일 기준			경감대상자 8% - 29일 기준			기초수급자	경감대상자12% - 29일 기준			기초수급자
-개정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본인부담금	식 대	합 계	0%
1 등급	539,806	275,500	815,306	215,922	275,500	491,422	.	323,884	275,500	599,384	.
2 등급	500,772	275,500	776,272	200,309	275,500	475,809	.	300,463	275,500	575,963	.
3.4.5 등급	472,932	275,500	748,432	189,173	275,500	464,673	.	283,759	275,500	559,259	.

2.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일반 등급 환자의 한 달 30일 기준으로 책정한 비용)

*이미용비: 1개월 1회 한하여 무료(개인적으로 원하는 이미용실을 원할 경우 개인부담)

*식 대 : 3식 7,500원 X 30일 = 225,000원 , 간식비 2,000원 X 30일 = 60,000원 총계: 285,000원

*경관식: 처방내용에 따름

3.매월입소비용 이외의 본인 및 가족부담사항

매월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혈압약, 당뇨약 등) 개별적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식품등

< 2023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0%

진료구분	본인부담금 (기준)		
	일반 (20%)	경감/의료급여(8%)	경감/의료급여(12%)
재진비용			
초진비용			